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운기 의원 외 12명

나. 의안번호 : 제1176호

다. 제출일자 : 2016. 5. 3

라. 회부일자 : 2016. 5. 13

2. 제안사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이상은 교통관련 외부전문가 또는 조합

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을 정함(안 제7조)

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9조)

마.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6. 5.18 ~ 2016. 5.25

○ 제출의견 :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원안 동의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동 조례에 대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¹⁾ 한 사항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특히, 위원회 구성 중 민간위원의 수를 과반수가 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수당지급 및 위원해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할 수

1) 법무담당관-15597(2015.10.7.)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세부내용의 경우에도 타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 내용 중 “위원회의 설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2항은²⁾ 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과 배치될 소지가 있고,

서울시와 법제처의 공동 조사에서도 위원회 운영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택시물류과장”과 “버스정책과장”의 경우 현행 도시교통본부 직위 기준을 반영한 것이나 서울시 직위 명칭 변경시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추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②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